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 ◆ 일시 : 2005. 11. 10.(목) 14:00
- ◆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
-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 학술지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

프 로 그 램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

인사말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사 회 : 안중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

좌 장 :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장애인보조견 소개 및 사례발표 : 14:15 ~ 14:35

장애인보조견 소개 및 현황

이동훈(삼성화재안내견학교 차장, 국제인증 안내견 보행지도사)

청각장애인의 생활과 보조견의 의미

유병권(한국농아인협회 용인시지부, 농통역사, 도우미견 '지오'사용자)

■ 주제발표 : 14:40 ~ 15:20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보조견의 의미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학 박사)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게 대한 복지정책(선진외국과의 입법·정책 비교)

김호연(강남대 교수, 특수교육학 박사, 미국 AER 보행전문가)

장애인보조견의 중요성과 활용사례

전숙연(한빛맹학교 교사, 내사랑 토람이 원작자, 안내견 '대양'사용자)

■ 지정토론 : 15:25 ~ 16:10

안규환(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디지털도서관팀장)

김철환(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이형구(이삭도우미개학교장)

Sheila O'Brien(미국 보조견 양성기관 NEADS 대표이사)

■ 종합토론 : 16:10 ~ 16:20

■ 폐회 : 16:20

< 목 차 >

■ 장애인보조견 소개 및 사례발표

1. 장애인보조견 소개 및 현황 -----
이 동 훈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차장)
2. 청각장애인의 생활과 보조견의 의미 -----
유 병 권 (한국농아인협회 용인시지부, 청각도우미견 ‘지오’ 사용자)

■ 주제발표

3.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보조견의 의미 -----
이 익 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안내견 ‘파도’ 사용자)
4.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복지정책(선진외국과의 입법·정책 비교)
김 호 연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5. 장애인보조견의 중요성과 활용사례 -----
전 숙 연 (한빛맹학교 교사, 안내견 ‘대양’ 사용자)

■ 지정토론

6. 민간운영 보조견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이 형 구 (이삭도우미개학교 교장)

청각장애인의 생활과 보조건의 의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용인지부

유병권

나의 청각도우미견 지오는 정말 멋진 견입니다. '지오'와 함께 지내 왔던 생활은 너무 행복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5살 때 열병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편으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지오는 세상을 알게 해 주었고 또한 삶의 의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지오는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동반을 하여 저에게 소리를 알려 줍니다. 아침에 깨워 주기도 하며, 초인종이나 노크, 혹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들리거나 팩스가 오면 이를 저에게 알려 주기도 합니다. 즉,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곳과 주인 사이를 여러 번 왕복을 하면서 주인의 몸을 터치하고 이 후에 주인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 저에게 경고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오가 한 때 동물보호소에 버려져 있는 견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지오가 온 후로 저는 알람시계 소리를 듣지 못해서 지각을 할까 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해서 중요한 손님이나 우편물이 도착한 걸 모를까 봐, 그리고 물 끓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화재가 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모두 씻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오는 침묵의 세월을 보내 왔던 저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지오는 저를 세상과 이어 주는 다리의 역할도 해 줍니다. 제가 백화점, 슈퍼마켓을 갈 때나 지하철, 버스를 탈 때 항상 동반하는 지오의 청각도우미견 조끼를 보고 사람들이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을 하여 청각도우미견에 대해 많이 물어보며 알고 싶어 합니다. 청각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은 장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 청각도우미견을 만나기 전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욱 적었습니다. 따라서 지오는 저에게 있어 가장 멋진 친구이며 저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견 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지오는 제게 달려와 귀엽게 애교를 떨어 주며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게도 해 줍니다. 집안 분위기가

떨렁해지면 지오가 끼어 들어서 바꿔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오는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친구를 충북 제천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잠깐 세우고 히터를 켜 놓은 채 잠자다 기름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 때 지오가 발길질을 하며 잠을 깨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지오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각도우미견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각도우미견으로 인하여 느끼는 저의 행복과 즐거움, 안도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지오는 저의 가장 멋진 친구요 가족이며 반려자입니다. 이러한 지오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각도우미견이 향후에 많이 보급되어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보조건의 의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이익섭

장애인 이동권과 보조건: 보편적 권리와 특수한 권리

오늘 우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건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토론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이동과 환경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들이다. 문제는 이들 기본 권리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 권리 보장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권리 즉 보조방법 이용의 권리 보장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경사로, 점자유도 বলক, 휠체어, 안내견을 포함한 보조건, 활동보조인 등은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 권리에 수반되는 조건들인 것이다. 최근 모든 대학 내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벽(Barrier-free) 확대는 교육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한 권리의 한 형태이다. 특히 보조건과 같이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영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개선이나 서비스 확대에만 제한해 온 전통적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UN 총회 채택에 근접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이러한 장애인의 특수한 권리들의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동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조약 제20조의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Article 20

PERSONAL MOBILITY (개인의 이동권)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liberty of movement with the greatest possibl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본 조약 참가국들은 장애인의 최대 가능한 독립성을 담보하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고 시행한다.

(a) facilitating the freedom of mo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 of their choice, and at affordable cost;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과하지 않게 알맞은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함

(b) facilitating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igh-quality mobility aids, devices, assistive technologies and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by making them available at affordable cost;

고품질 이동보조수단, 보장기술, 그리고 이동을 돕는 (인간, 동물 등) 다른 형태의 지원 혹은 매개체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과 활용을 촉진함

(c) providing training in mobility skill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specialist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이동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d) encouraging private entities that produce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to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동보조수단, 기구, 그리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 이동에 대한 다양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함

장애인보조견 거부는 곧 인권침해 행위

앞서 보신 인터뷰는 지난 봄 내한한 세계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의 임원(Council Member)인 Mr. Ian Cox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장애인보조견 현황에 대하여 진행하였던 것이다. 자막 번역이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 번역한다.

"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장애인보조견 선진국의 경우에도, 안내견을 예로 할 때

약 5~10% 경우는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시 완전 거부는 아니더라도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서 아이와 함께 식료품 쇼핑을 마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택시를 타려던 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용자가 연이어서 택시 탑승을 거부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부 직후 정안인 시민이 적어 준 차량번호를 안내견학교에 알려서 안내견학교가 택시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지만 주로 이슬람 문화권 이민자들이 - 이슬람 관습은 개와 아주 가까운 거리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운전자들인 택시회사는 장애인보조견과 법적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도 여전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벌금 부과라는 법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인권위원회가 개입, 택시회사의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태도를 바꿀 것을 권고, 안내견학교가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견 선발국의 경우, 이러한 출입 및 탑승 거부 사례 발생 시 당사자는 직접 경찰서나 인권위원회 등을 직접 접촉하여 피해를 소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내견학교와 같은 보조견 양성기관을 먼저 접촉, 양성기관이 피해사례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협조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처럼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의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에 관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보조견 사용자의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실상,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거부와 차별은 본질적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한 시민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장애인보조견 -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등은 함께 하는 장애인 사용자의 신체장애를 보완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함께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인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한 거부와 차별은 궁극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거부와 차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아직도 많은 경우에 개 한 마리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생각, 선호도, 혹은 사전 인지 여부 등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정인의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상충한다면 무엇이 먼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 등 제도에 관련한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장소나 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이 좌절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건물·도로·교통수단 등 무생물적 사회 인프라가 직접적인 이유일 경우보다 출입과 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거부 당하는 경우가 심리적인 면에서 더 큰 상처를 안겨 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장애인보조건 사용자들은 곳곳에서 택시 운전사로부터, 식당 주인으로부터, 공연장 직원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으며, 출입과 탑승을 하더라도 설득과 논쟁 끝에 지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한 안내견 사용자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오랜 만에 친구를 만나 한 잔을 하러 가더라도 그 곳이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낯선 곳이면, 전투에 출정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출입문을 들어서게 됩니다."

장애인보조건 사용자 인권침해 및 해결 사례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장애인보조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건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령(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이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 사례 발생 시 신고처의 불명확성과 해당 관청-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의 인식 부족,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꺼리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한 건의 경우도, 올 해 초 방영된 한 안내견 TV 드라마의 실화 주인공인 안내견 사용자(안내견'대양'의 사용자인 전숙연씨)가 당사자로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난 후에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후 이어질 발제와 패널 토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현행 장애인보조건과 관련한 법규는 보다 강화되고 하위 규칙과 지자체 법규 등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올 해 이 토론회의 계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보조건 거부 사례 개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보조건에 대한 인권 측면의 공식적 이슈화란 점에서 고무적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① C 대형할인점의 안내견 거부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형할인점 C는 안내견을 동반하여 쇼핑 온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안내견을 동반한 입장과 쇼핑은 불가하다고 출입을 거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 장애인보조견 표지 제시와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견 사용자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출입 거부는 지속되었으며, 거부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 달라는 안내견 사용자의 요구에 복수의 근무자들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문구와 서명을 하였다. 안내견 사용자는 출입거부 사실과 해당 기록을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하며, 현장에서 인격적 모욕까지 당한 이번 경우 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구청은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며 앞으로는 출입을 허용하라는 협조 공문을 관련 업체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가름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해당 구청 취재까지를 시도하자 구청은 곧 200만원의 과태료를 C 할인점에 부과하였다.

② L 카페의 안내견 거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중재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간 L 카페에서 안내견 사용자가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안내견 사용자와 친구는 장애인보조견 표지 제시와 함께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안내견 출입은 안된다'는 지배인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맹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내견 사용자는 앞으로 같은 일을 겪어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권리를 되찾겠다는 동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부 사실을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실시하여 양 당사자 참석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해당 업체의 장애인보조견 출입 환영을 서면으로 약속받았다.

호주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호주의 인권위원회인 HREOC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HREOC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사항 해결 외에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권고,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회교육, 각종 인권신장 규약과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한다.

호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등 차별금지법과

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할 책임을 가진다. 2004년의 경우 약 10,000 건에 달하는 진정 건수 중 43%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한 장애 관련 진정사항일 정도로 인권위원회 업무 중 장애인차별금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 접근권, 그리고 고용 평등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장애인보조견에 관하여 최근 Queensland 주정부와 함께 기존의 주법인 안내견법과 더불어 지체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준비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게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조할 만한 해외 기관일 것이다.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복지정책 (선진외국과의 입법·정책 비교)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김호연

THE SEEING EYE

By
Dorothy Harrison Eustis

TO EVERYONE, I think, there is always something particularly pathetic about a blind man. Shorn of his strength and his independence, he is a prey to all the sensitiveness of his position and he is at the mercy of all with whom he comes in contact. The sensitiveness, above all, is an almost insuperable obstacle to cope with in his fight for a new life, for life goes on willy-nilly and the new conditions must be reckoned with. In darkness and uncertainty he must start again, wholly dependent on outside help for every move. His other senses may rally to his aid, but they cannot replace his eyesight. To man's never failing friend has been accorded this special privilege. Gentlemen, I give you the German shepherd dog.

Because of their extraordinary intelligence and fidelity, Germany has chosen her own breed of shepherd dog to

nice looking lot, especially when you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not more than ten or twelve dollars has been paid for one of them. Moreover, they have a certain expression in their eyes, a sturdiness and interest which is too often lacking in their fashionable cousins. As the qualities of courage and intelligence ar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shepherd dog wherever he is found unspoiled by intensive show breeding, it is not so hard to collect groups of these leaders for the blind as it would seem, and after a few simple tests to prove he is fit for the service, the new recruit can go to work, and all his work is founded on obedience.

*Now these are the Laws of the Jungle,
And many and mighty are they;
But the Head and the Hoof of the Law,
And the Hunch and the Hump, is—Obey!*

It is little short of marvelous how a raw dog can be taken into the school and in four months be turned out a blind leader, and the miracle is that the dog so perfectly

apt pupil he learns it easily and graduates into the next class. Here he begins his work in the leading harness, which is more easily seen in the pictures than explained in words. He now learns that although in hours of play and exercise he can romp with other dogs in the park, from the moment the harness is put on him dogs must be snarled to him. Called from his play, a dog advanced in his work is ridiculously like a business man, called to his office; you can almost see him lay aside his newspaper, settle his coat, straighten his necktie and take on an air of business affairs.

Life in a Big City

IN THE beginning, all schooling went on in the park; but it was soon found that a dog might work perfectly there and be of no use in the bustle and distraction of a city, so the park was given over to obedience exercises and the advanced classes were moved into the city itself. From the moment a dog wears the leading harness his schooling is done under actual working conditions. He must go at a fast walk so that the slackening in his gait for an obstacle is instantly felt through the rigid handle of his harness. For curbs he pulls back and stands still so that his master can find the edge with his cane; for steps, approaching traffic and all obstacles barring progress, he sits down; and for trees, letter boxes, scaffolds, pedestrians, he

(Continued on Page 45)



help her in the rehabilitation of her war blind, and in the lovely city of Potsdam she has established a very simple and businesslike school for training her dogs as blind leaders. Inclosed in a high board fence, the school consists of dormitories for the blind, kennels for the dogs and quarters for the teachers, the different buildings framing a large park laid out in sidewalks and roads with curbs, steps, bridges and obstacles of all kinds, such as scaffolds, barriers, telegraph poles and ditches—everything in fact that the blind man has to cope with in everyday life.

Many Dogs and No Fights

THREE forces work together to make this school the model that it has become: The German Government, the Shepherd Dog Club of Germany and the association of war-blinded soldiers. The latter is a splendid organization of some 3000 men which strives continually and successfully to keep its members in work and above pity or charity and out of the class of beggars and peddlers. The government furnishes the land for the school and further grants each blind man a subsidy for his dog's keep after he has left the school.

The dogs are supplied by the Shepherd Dog Club of Germany and are either donated or bought at the lowest price compatible with the qualities they must have, for these blind leaders are the distant cousins and the cinderellas of famous show dogs; they not only have the goods but they deliver them in the shape of courage, intelligence and service. The total cost of a dog, trained and ready to leave the school, is about sixty dollars, which includes the initial cost of the dog.

They must be young and healthy, with quiet, steady nerves and a good character. As a whole, they are a 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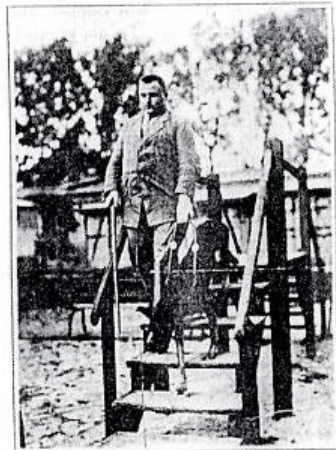


assimilates his instruction. From the very small beginnings of becoming absolutely house-broken, he is taken step by step upward to his life work of leading a blind man, of being that man's eyes and his sword and buckler. He is first let loose to run with all the other dogs and to learn to mind his P's and Q's and not to fight.

For any dog full of life and energy, this first step is an education in itself and of itself starts him thinking. After he has mastered his lesson, the park becomes a schoolroom; and here, with dogs running loose, people passing in all directions, laughing and talking, he has his first studies in concentration and learns to sit and lie down on command, to speak, to fetch, to carry; and he must learn good will and to do it all cheerfully, gladly and with dispatch. This is the A B C, or kindergarten, of obedience, and if he is an



PHOTO BY KEATINGE NEW YORK, N.Y.



THE NATIONAL LIFE AND ACCIDENT INSURANCE CO., Inc.

Nashville, Tenn.
November 9, 1927

Miss Dorothy Harrison Eustis
c/o Curtis Pub. Co.
Independent Sq.
Philadelphia

My dear Miss Eustis:

In reference to your article "The All Seeing Eye" which appeared in the Saturday Evening Post of Nov. 5th, is of great interest to me so that is the reason why I take the liberty to address this letter to you.

I have often thought of this solution for the blind but have never heard of it being put to a practical use before, of course there are a few cas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realizing that if handled in the proper manner and supervised correctly this would be quite a help to the blind of our country. I would appreciate very much if you would be kind enough to give me more information upon this matter and if you would give me the address of this school in Germany, or of any trainer in this country who might have any thing similar as I should like very much to forward this work in this country, as three and a half years ago at the age of sixteen I was deprived of my sight and know from practical experience what rehabilitation means and what it means to be dependent upon a paid helper who are unsympathetic and not interested in their work and do not appreciate kindness as shown to them and as you well know that there are many throughout the land who not even have paid attendants.

I should like very much to be able to express my personal thanks and appreciation for the way in which you handle and put your message across. It touched those in my condition more knowing that what you said was near the real truth and I do believe that this gave the seeing public a very good idea of the situation and I hope it will help the public to come to a more clearer understanding as we do not require sympathy but a laughing word and a pat upon the back, kindly excuse me for rambling on in this manner but in my feeble way I am trying to give you the thanks you deserve.

Thanking you in advance for any information you may be able to let me have.

I remain sincerely yours,

Morris S. Frank
National Life and Accident Ins. Co.
National Bldg.
Nashville, Tenn.

친애하는 유스티스 여사께,

Saturday Evening Post 11월 5일자에 당신께서 기고한 "The All Seeing Eye"란 기사를 읽고 커다란 관심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겠다고 가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차에 여사님의 글을 읽고서 안내견 프로그램이 이곳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국내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반 전 16살의 나이로 시력을 잃게 되어 현재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재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심도 없고 자신의 일에 열의도 없으며 친절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유급 안내인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이해하시겠지요. 또한 우리 나라에는 그런 유급 안내인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허다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당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국내에 안내견을 전파하고 싶은 열의가 있음을 우선 알립니다. 안내견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와 혹, 독일에 있는 훈련기관의 주소나 국내에 유사한 시설을 가진 훈련사를 아신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견에 대한 메시지를 잘 구성하셔서 전달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 내용처럼 당신이 쓰신 글이 정말 실제에 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기사는 정안인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값싼 동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건네는 말 한 마디 그리고 격려의 손길을 원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나마 당신에게 찬사와 감사를 전하려는 것이니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 전해 주실 정보에 미리 감사드리며,
Morris S. Frank

1927년 11월 9일

1927년 미국의 도로시 유스티스(Dorothy Eustis) 여사가 기고한 안내견 훈련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Nashville의 한 보험회사에 일하던 20세 시각장애인 청년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가 유스티스 여사에게 위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세계 최초의 안내견학교인 'The Seeing Eye'의 설립이 본격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편지 내용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주 부족하던 1920년대, 제 1차 세계대전 직 후의 척박한 사회환경 속에서 독립성과 존엄성의 상징인 "안내견"이, 한 선각자와 한 용감하고 의식 있는 시각장애인 청년 간의 만남을 바탕으로 싹을 피웠던 것이다. 우리가 쉽게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보조견의 효시인 안내견학교는 2차 대전 후에야 자리잡은 현대적인 현지팡이 보행법보다 오히려 일찍 탄생하였다.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첫째,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둘째, 장애인보조견 양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 등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영역에서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외국의 입법·정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장애인보조견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조문은 아래와 같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시행일 2000.1.1]]

1. 보조견 사용자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 (Public Access Right)

장애인보조견 선발국인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략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애완동물관리법, 그리고 장애인보조견법(聯邦制의 경우 주로 州法) 등 복수의 법률이 각기 그 특성에 맞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의 관련법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동일한 성격의 규정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3개국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법

① 미국

우선 연방법(Federal Law)으로서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公正住居法(Fair Housing Act), 항공기탑승관리법(Air Carrier Access Act) 등이 있다. ADA는 장애가 근본 원인이 되어 동반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출입 거부 등 불평등을 당해서는 아니됨을, 공정주거법은 장애인보조견은 여하한 '애완동물 거주 금지' 규정에 관계 없이 해당 장애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음을, 그리고 장애인보조견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한 연방법인 항공기탑승관리법은 보조견의 장애인 동반 탑승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각 주법(State Law)은 대동소이하게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과 주택임대 및 고용 상의 평등, 그리고 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例: New York 주 Civil Rights Law, Article 4-B와 Transportation Law Section 147)
미국의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Q&A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미국 서비스견에 대한 안내

문1. 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답: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근거하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체 즉 식당, 호텔, 편의점, 택시, 극장, 스포츠센터 등등 및 기타 대중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ADA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서비스견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 대중과 같이 이용객으로 맞아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2. 서비스견이란 무엇인가요?

답: ADA의 정의를 살펴보면 서비스견이란 시각장애인안내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신호견

(signal dog), 등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한다. 동물이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자격증의 소지 여부를 막론하고 AD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견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돕는 기능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 예) 1. 청각장애인에게 위험 신호 등을 보내는 청각장애도우미견
2. 보행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함께 밀어 주거나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3.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미니 말 (miniature horse) 등이 있다.

문3. 서비스견인지 아니면 애완동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답: 거의 모든 서비스견은 특별히 제작된 조끼나 서비스 동물임을 알리는 문구가 찍힌 손잡이나 끈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과 같은 내용서는 소지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혹시라도 서비스견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온 주인에게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4. 우리 사업장에 서비스견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방문했을 경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답: 일반 손님과 똑같이 대하시고, 일반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비스견을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손님과 분리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5. 우리 사업장에는 모든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서비스견들의 출입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답: 물론입니다. 서비스견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ADA는 많은 사업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애완동물 금지 제도에 예외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란 단순히 “단 서비스견은 출입을 허락함” 과 같은 명시를 의미합니다.

문6. 우리 지역 보건국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다른 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에 ADA 법을 제가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위배하게 됩니다. ADA 법은 연방정부 법으로서 주나 지역사회의 법이나 규정보다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문7. 서비스견과 함께 온 주인에게 유지비나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단지 출입한 것으로 부가적인 유지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손님들에게 부가하는 것처럼 가령 호텔에서 가구 등에 서비스견이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일반 손님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8. 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데 어떤 동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털도 빠지고, 가끔 실례를 하기도 해서 싫는데, 서비스견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뢰에 응하지 않

을 경우 ADA 법에 저촉되나요?

답: 그것은 법을 위배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비스견을 태웠을 경우 더 높은 이용 요금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문9. 우리 사업장에 서비스견이 방문했을 경우 서비스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서비스견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이용하는 주인의 일입니다. 물이나 먹을 것 주는 일은 스케줄에 따라 이용하는 주인이 관리하는 일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10. 혹시 서비스견이 다른 손님들에게 짖거나 으르렁대면서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어느 동물 (서비스견 포함)을 막론하고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현상일 경우 본인의 경험과 판단에 입각하여 격리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11. 우리 사업장에서 서비스견이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어수선했을 경우 혼란을 가져왔을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답: 음식점, 호텔, 가게 등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 보지만 간혹 어두운 곳에서 영화를 조용히 감상하는데 짖거나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필요로 하거나 ADA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자세가 알고 싶으시면 U.S. Department of Justice's 로 연락하십시오. 무료 안내전화는 800-514-0301입니다>

② 호주

연방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장애인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상대적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처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리법(Domestic Animals Act)은 이 법이 규정하는 애완동물 동반이 위법인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보조견 동반은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법(State Law)의 경우 1997년 개정된 Queensland 州法인 안내견법(Guide Dogs Amendment Act)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안내견 훈련사와 퍼피워킹 자원봉사자에게도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일본

일본은 40년에 가까운 안내견 역사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야 身體障礙者補助犬法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은 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시행 3년 후 보완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한 2005년 10월 현재 처벌규정 및 부과기관 명확화, 보조견 훈련사에게도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개정 준비작업 중에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 36조 개정 의견

미국, 호주, 일본의 보조견에 관한 법은 역사가 많이 길지는 않으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보조견 사용자의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의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에 관해 그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이 단 하나의 법인, 장애인복지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점과 그 조문마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3항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입법 사례는 대부분 접근권의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추상적인 조문 내용은 종종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보조견 동거를 이유로 주거지 결정이나 거주에 어떠한 불평등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 법령으로도 권리가 보장되기는 하나,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이나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령 - 하위법에 불과한 - 을 핑계로 한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접근권의 보장 대상이 훈련사나 펫피워킹 자원봉사자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 법령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우수한 보조견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의 적응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타 관련법, 예를 들면 공정주거법이나 동물관리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률에도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보조견사용자의 접근성이 법적 근거 하에 확실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보조견 양성 지원

장애인보조견 양성 사업은 많은 시간과 자금의 투자, 그리고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수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이 전문 양성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하여 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번식부터 훈련과 교육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안내견을 훈련하고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안내견 전문가는 안내견 훈련사 자격과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전문인력 양성만 하더라도 4년의 기간이 걸린다. 또한 시설 측면에서는 개들을 사육하는 견사동, 진료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교육생 숙소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계안내견협회(IGDF)나 세계도우미견협회(ADI) 같은 국제기구는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를 제시하며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의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센터는 국제기구의 회원 기관으로서 해외연수나 자문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소요자금 면에서도 장애인보조견은 선진형 특화 서비스이다. 한 번 양성되면 보통 7년여 정도 일을 하는 장애인보조견이지만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보통 수천만원 이상이 든다. 미국 최대 안내견학교인 캘리포니아 소재 Guide Dogs for the Blind, Inc.의 경우 2004년 일년 간 342두 양성에 총 295억원을 지출하여 두당 소요자금을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약 8,600만원이 되며(2004 Financial Statement), 일본 中部盲導犬協會는 2004년 1년간 10두를 기증하였는데 총 운영비는 약 28억, 시설 관련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6억원을 지출하여 1두 당 소요자금은 1억6천만원에 이른다(2004 收支計算書).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은 보통 ‘맹도견육성비보조금’ 혹은 ‘맹도견취득비조성금’이라는 예산을 두고 해당 지자체의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기증되는 경우 1두 당 약 150만엔(1,300만원)의 지원비를 안내견 양성기관에 지급한다. 높은 양성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부문화가 사회에 널리 정착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과 일반 기부금과 지자체 지원금에 고르게 의존하는 일본의 장애인보조견 양성기관들은 안정된 자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는 보조견 양성기관 세 곳 중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삼성SDI도우미견센터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삭도우미개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운영비 조달이 어렵고 아주 영세한 실정이다.

한편, 운영자금 조성 방식이 어떠한 장애인보조건은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기증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다만, 기증 후 발생하는 보조건의 사료비와 예방접종 등 진료비는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보조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능력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보조건 유지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우 이를 일부 기금이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나가노縣 惠庭市 사례), 연간 약 10만엔으로 추정되는 보조건의 유지비용 중 절반 가까운 4만8천엔 정도를 지자체가 보조건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보조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건은 한 민간기업에 의하여 주도되어오다 시피 하였다. 아직 보급 두수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보조건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보장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다양한 자원봉사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 교육에 대한 기여, 장애인보조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등은 오늘까지 이룬 성과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급 확대, 정부·지자체와 일반 기부금을 활용한 양성기관의 점진적 공공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선진 수준의 법제도 마련 등 또 다른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 ① 장애인복지법 개정 :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보완 개정
- ② 경제능력이 낮은 사용자 혹은 전체 사용자에게 대한 보조건 유지비용 지원
 - 일본과 같은 지자체 혹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안

- 장애인복지법상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의거하는 지원 방안
- 전동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기금 환급 방식에 준하는 지원 방안

③ 기타 관련법 제정·개정 시 장애인보조견 사항의 미래지향적 반영

-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案에는 애완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허용이나 금지 규정이 없는 바,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경우 장애인보조견은 출입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 호주의 사례와 같은 장애인보조견 사항 명시

④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보조견 양성비 지원제도와 방안 마련

4. 맺음말

얼마 전 용산에 재개장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지한 '박물관 관람 준수사항' 다섯 가지 중 두번째 내용이, "음식물 반입과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디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좋은 징후이다. 단계적인 정책과제의 해결과 다양한 입법 추진과 함께, 이러한 법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장애의 벽과 담장을 허무는 문화 운동이 중요함은 굳이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보조견은 바로 이 땅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알리는 훌륭한 연결도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

This was a poignant moment in Seeing Eye history. It was Buddy's last trip, after crossing the country for years with Morris Frank, spreading the word about The Seeing Eye. The companions had just convinced United Airlines to allow dog guides to fly together with their masters. Buddy died from cancer in 1938, soon after this photograph was taken.



장애인보조건의 중요성과 활용 사례

한빛맹학교 교사

전숙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맹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숙연입니다. 우선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 장애인보조건 표지 2000-50호 안내견 '대양'이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첫 번째 안내견과의 추억을 담은 수기 "내사랑 토람이"가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어 요즈음은 꽤 안정된 안내견과의 보행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 내야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2년 6월 25일, 저희 집 과수원에서 농약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3년 여의 치료기간 동안 병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예쁜 딸도 씩씩하던 아들 녀석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는 것이 치유가 가능한 질병과 달라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그 이후 시작한 재활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안내견과의 보행이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단독보행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여러 사람의 권유에 많은 고민을 해 보았으나, 개를 믿고 제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이 우선 앞섰습니다. 재활교육을 끝내고 맹학교 고등부 입학과 대학원 진학을 동시에 시작하면서 활동이 잦아지게 되었고, 서툰 점자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흰지팡이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것은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천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감각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중도실명인에게 있어서 흰지팡이를 의지한 단독 보행은 저를 너무 지치게 하였으며, 생각은 간절하여도 익숙한 곳이 아니면 쉽게 이동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늘 가던 곳만 가게 되고 새로운 곳을 찾아 가는 것은 불안하기만 하여 이미 성장하였던 사회성마저 왜곡되는 또 다른 장애를 낳았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보행의 단서가 빗소리에 파묻히기 마련이었고 생각을 더듬다 흰지팡이라도 손에서 놓치게 되면 빗물로 흥건한 바닥을 한참은 더듬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던 날은 그 많던 거리의 사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빗

소리에 동서남북 모두가 혼동 그 자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면서 안내견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토람'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뢰감보다는 불안함이 앞서기만 하였으나 안내견 보행법이 익숙해지면서 저에게 토람이의 존재는 점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를 향하여 보일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현실이었습니다. 토람이는 저를 위하여 태어난 분신이라도 되는 양 자신의 삶을 모두 저를 위해 아낌없이 소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 때에도 제 곁에는 토람이가 있었고, 제가 아플 때에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저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토람이는 언제나 저의 수호천사가 되었기에 실명 후 처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살아 있음에 대한 환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람이가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동반자였는지는 토람이가 제 곁을 영원히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람이와 함께 하였던 4년 간, 아직도 안내견이 지금보다 더 생소한 시기였던 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홀대와 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호텔과 비행기, 크고 작은 식당은 물론 경찰서에서까지 우리는 거부의 표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택시를 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버스 역시 싫은 소리 듣지 않고 탑승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승무원들은 별 상관을 하지 않았으나 승객들의 비명과 싫은 소리에는 이력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추위 속에서 떨다가 겨우 겨우 타게 된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기사의 호통에 애원과 사정을 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백마 탄 기사와 같은 승객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간신히 승차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와 토람이를 보면 슬그머니 문을 닫아 버리는 차도 많았지요.

요즘 같으면 싫어하는 차는 웃으면서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릴 여유라도 가졌으련만 그 당시는 그 차를 그냥 보내면 다시는 다음 차를 기다릴 용기조차 나지 않을까 그 조그마한 심지라도 지킬 양으로 어찌나 울면서 불면서 굶히기 싫기만 하였던지... 동네 공터에서 대소변이라도 누일라치면 왜 그렇게도 큰소리로 호통을 치던지, 산에 가서 누이는 게 어떠한 동네 사람들의 은근한 권유는 제가 안내견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임은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할 따름이

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토람이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비장출혈이라는 일종의 혈종암이었습니다. 대수술을 하고 갖은 치료를 하였으나 발병 후 두 달만에 토람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으로 제 가슴을 뜯었던지요. 4년간 '오늘도 무사히'라는 명제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기어이 하루도 편히 쉬게 하지 못한 채 제 곁에서 토람이를 보내던 날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람이의 짧은 생 동안 이 사회는 토람이를 섣불리 용납하지 않았고 토람이는 제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토람이가 제 가슴 속에만 묻어 두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람이는 저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이었기에, 도우미견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알려 토람이와 같은 희생양이 다시 생기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 숨겨 왔던 둘만의 비밀은, 토람이를 잃은 지 2년 뒤인 2003년에야 비로소 털어 놓고 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웃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개로 태어났으나 토람이의 일생이 지닌 개 이상의 숭고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토람이의 일생이 못난 저 같은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하였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드라마가 방영되고서 주위의 인식은 생각하였던 것 보다 훨씬 나아졌으며, 토람이는 죽어서도 영원히 저와 같은 장애인의 도우미견이었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느 대형할인마트에서 또다시 대양이가 거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절에는 이미 익숙하였지만 드라마가 방영되고 너서는 마냥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였습니다. 마침 남편이 옆에서 거들어 주어 거부 사실에 대한 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았습니다. 안내견은 저와 같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자의 독립된 생활을 도와줄 도우미견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의 장소의 출입을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라는 이유로 출입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해당업체 홍보부 측은 종업원이 서명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조금만 기다리면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려 하였는데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갔다는 왜곡된 거짓 증언을 하여 장애인은 그저 위험하고 귀찮은 존재라는 듯한 인상을 일반 대중에게 주어 저의 인권마저 유린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의를 생각하고 스

스로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저와 같은 약자를 변호해 줄 과랑새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잘못된 증언을 바로잡고 공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보조건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엉터리 사규를 정정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구매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누구도 쉽게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내사랑 토람이' 동호회를 통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옴부즈맨 등 시민권익보호기관 등에서 협조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언론 보도 이후 안일하기만 하던 관할구청은 태도를 바꾸고 사실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5년이라는 세월 뒤 드디어 장애인보조건 거부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양심을 처음 실현하는 데 걸린 시간과 에너지는 저를 완전히 지치게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력을 쌓아 정당한 노동으로 자활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고 몇몇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를 한탄하기 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장애인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능력의 장애로 보는 높은 벽에 부딪혀 울 때가 많습니다.

토람이를 만나기 전 제가 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은 단지 개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을 끼듯 지체장애인이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듯 흰지팡이가 대신에 안내견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흰지팡이와 안내견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흰지팡이는 사용이 끝나면 접어서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하면 밥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쉬하고 싶다고 제 주위를 서성이지도 않겠지만 저는 제게 도움을 주면서 또 제 손에 의지하여 제게 온기와 활력을 주는 안내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양이나 다른 기타의 도우미견들이 토람이와 같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피지도 못하고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저와 동반한 안내견이 정말 싫으면 건강하신 그 분이 그 자리를 피하면 안될까요?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며 밀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토람이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내견을 그저 개로만 취급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의 배려인 목인까지도 저희는 감사히 여깁니다. 도우미견을 예쁘게 봐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도우미견을 동반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

리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 시민 모두가 도우미견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필요에 의하여 개를 동반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며 이에 따라 치료와 구충, 목욕, 대소변후의 뒤처리와 최소한의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에까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를 싫어하더라도 목적견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우미견들을 허용해 주시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충분히 교육을 받은 안내견을 데리고서도 독립된 생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저는 단지 제 선택을 존중받고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뿐입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조건이라 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운영 보조견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이형구 (이삭도우미개학교장)

0. 증보문헌비고 (고려-조선말)의 동물편

고려 충열왕(高麗忠烈王)(1274년)때에 경성에 큰 역질이 돌았다. 이창의 눈먼아이(맹아)는 부모가 모두 역질로 죽었으므로 홀로 한 마리의 흰개와 함께 살면서 개꼬리를 잡고 다녔다.

사람들이 밥을 주면 개가 먼저 핥지 않았고 아이가 목마르다 하면 개가 끌고 우물에 가서 마시게 하였다. 아이가 개를 의지하면서 사니 보는 이들이 불쌍히 여기고 "의견(義犬)"이라 불렀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의미

인간과 아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개를 교육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의 잃어버리고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 주고 도와줌으로서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다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단순히 수혜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의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

2. 용어정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활용한 용어를 정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표1]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용어

보조견의 종류	미국, 일본등	한국현재용어	바람직한 용어
장애인보조견	Assistance Dog 障碍人補助犬	장애인보조견	장애인도우미개(견)
시각장애인보조견	Guild Dog, Leader Dog. 盲導犬	맹도견. 맹인안내견. 시각장애인안내견. 맹인견. 맹견. 안내견	시각장애인도우미개(견))
청각장애인보조견	Heardog, Hearing Dog 聽導犬	보청견. 안내견. 청각안내견. 청도견.	청각장애인도우미개(견))

2. 장애인 도우미개의 활용

- 신체적인 장애인

0. 지체장애인도우미개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전깃불을 켜고 끄며,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주고 심부름을 한다.

0. 시각장애인도우미개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여 장애물을 피해가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막아주며, 건널목이나 의자로 안내하고 주인을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한다.

0.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소리(초인종, 자명종, 팩스, 아기울음, 물주전자, 화재경보 등)를 개가 듣고 주인에게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소리의 근원지를 왕복하여 장애인을 소리의 근원지로 안내한다.

0. 어르신도우미개

고령화 사회를 맞아 홀로계신 어르신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하며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0. 기타도우미개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듯 개를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다.

- 정신적인 장애인

0. 치료도우미개

정신지체, 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생명이 있고 감정을 갖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신회복의 동기를 부여하며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한다.

3. 장애인도우미개의 역사

- 시각장애인도우미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3년 독일 포츠담에 훈련센터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0. 미국은 1929년, 영국 1931년, 일본 1957년에 시각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 했으며

0. 1980-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도우미개학교의 수가 증가되어 현재 영국, 일본, 미국 등 27개국에 70여개의 양성기관이 있으며 약 20,000여 마리의 도우미개가 활동하고 있다.

- 청각장애인도우미개는 1976년 미국, 1982년 영국에서 양성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세계도우미견협회가 창설되어

0. 미국, 영국, 한국 등 10여개국 80여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500여 마리의 도우미개들이 활동하고 있다.

4. 한국의 역사

- 1992년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이형구 소장에 의해 시각 및 지체도우미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여

0. 1993년 국내 1, 2호인 시각장애인도우미개 “나들이”가 이승희씨에게, “마실이”를 이영섭씨에게 무료 분양하게 되었으며

0. 1993년 삼성안내견학교가 설립되어 훈련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0여두의 시각장애인도우미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도우미개는 이삭도우미개학교에서 1997년부터 훈련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삼성도우미견센터가 2001년부터 훈련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여두의 도우미개가 활동 중에 있다.

5. 장애인도우미개의 수요량(추정)

[표2]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3월) 단위 : 명

장애종별		계	1급	2급	3급	소계	표적대상 5%
신체장애	지체	902,096	40,386	86,155	153,861	280,402	14,020
	시각	175,797	28,321	6,954	8,703	43,978	2,198
	청각	146,723	2,890	42,363	25,725	70,978	3,548
	계	1,224,616	71,597	135,472	188,289	395,358	19,766
정신장애	정신지체	121,453	36,375	48,796	36,282	121,453	6,072
	발달장애	8,293	2,845	3,908	1,540	8,293	414
	정신장애	54,551	8,944	27,896	17,711	54,551	2,727
	계	184,297	48,164	80,600	55,533	184,297	9,213

[표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 산출근거	인원수(명)
일반대상	전국등록장애인수(보건복지부 2005년3월발표)	1,654,627
위험대상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중 1,2,3급 장애인의 수	395,358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중 1, 2, 3급 장애인 수	184,297
표적대상	위험대상 신체장애인 중 어린이, 중증장애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키울 수 없는 조건 등을 제외한 도우미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 인원	19,766
	위험대상 정신장애인 중 어린이, 중증장애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키울 수 없는 조건 등을 제외한 도우미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 인원	9,213

6.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 및 보급 원가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원가 계산은 사업의 시스템과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제시하는 계산표는 현재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시스템에서 몇 가지 사항이 향상된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1) 시각, 지체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

(1) 조건

- ① 견종은 라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한다.
- ② 자질이 우수한 종견과 모견을 구입하여 년 1회 번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
(종, 모견 구입비는 후보견의 자질에 따라 다르지만 두당 1000만원으로 한다)
- ③ 도우미개의 성공률을 5-60%로 하며 5두 분양을 목표로 9두의 후보견을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자건을 생후 50일 경에 퍼피웍킹을 시작하여 생후 12개월 때 본격적인 복종훈련 및 장애물 훈련 등 시각장애인도우미개 훈련을 10개월 동안 한다.
- ⑤ 훈련 조교는 1인 3두의 도우미개를 훈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표4] 시각,지체장애인도우미개육성및보급원가계산표 (단위 : 원)

항	목	내용	산출근거	금액
직접 사업비	종모견 관리	종견1두 모견 1두 구입	10,000,000원 X 2두	20,000,000
		종모견 관리비	150,000원 X 2두 X 12개월	3,600,000
		소계		23,600,000
	후보견 육성	자견관리비	20,000원 X 9두 X 2개월	360,000
		자견 사료비 등	30,000원 X 9두 X 10개월	2,700,000
		관리 및 훈육비	200,000원 X 9두 X 10개월	18,000,000
		소계		21,060,000
	훈련과정	훈련중 사료비	50,000원 X 9두 X 10개월	4,500,000
		훈련조교 인건비	665,000원 X 9두 X 10개월	59,850,000
		비용(야외훈련등)	100,000원 X 9두 X 10개월	9,000,000
		소계		73,350,000
	분양교육	입소교육숙식비	40,000원 X 5두 X 21일	4,200,000
		현장적응훈련비	40,000원 X 5두 X 7일	1,400,000
		훈련조교 수당	70,000원 X 5두 X 28일	9,800,000
		소계		15,400,000
	기타	의료비(예방접종, 불임수술등)	20,000원 X 22개월 X 9두	3,960,000
		용품비 (꿀채,줄등)	150,000원 X 9두	1,350,000
		소계		5,310,000
	사후관리	분양후 분기별관리	40,000원 X 4회 X 5두	800,000
간접비		기관운영비등	1,000,000 X 22개월	22,000,000
합 계 (시각도우미개 5두 훈련 분양)				160,720,000
시각장애인도우미개 1두의 경우 : $160,720,000 / 5 = 32,144,000$ 원/두				
중, 모견 구입비를 제외했을 경우(차년도) :				
$(160,720,000 - 20,000,000) / 5 = 28,144,000$ 원/두				

2)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표

(1) 조건

- ① 견종은 소형 애완견종(코카스파니엘,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등)으로 한다.
- ② 자질이 우수한 종견과 모견을 구입하여 년 1회 번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
(종, 모견 구입비는 후보견의 자질에 따라 다르지만 두당 300만원으로 한다)
- ③ 도우미개의 성공률을 5-60%로 하며 5두 분양을 목표로 9두의 후보견을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자견을 생후 50일 경에 퍼피웍킹을 시작하여 생후 8개월 때 본격적인 소리훈련 및 복종훈련 등 청각장애인도우미개 훈련을 5개월 동안 한다.
- ⑤ 훈련 조교는 1인 5두의 도우미개를 훈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표5]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표 (단위 : 원)

항	목	내용	산출근거	금액
직접 사업비	종모견 관리	종견1두	1,000,000원 X 2두	2,000,000
		모견 1두 구입		
		종모견 관리비	30,000원 X 2두 X 12개월	720,000
		소계		2,720,000
	후보견 육성	자견관리비	5,000원 X 9두 X 2개월	90,000
		자견 사료비 등	10,000원 X 9두 X 6개월	540,000
		관리 및 훈육비	30,000원 X 9두 X 6개월	1,620,000
		소계		2,250,000
	훈련과정	훈련중 사료비	20,000원 X 9두 X 5개월	900,000
		훈련조교 인건비	350,000원 X 9두 X 5개월	15,750,000
		소계		16,650,000
	분양교육	입소교육숙식비	40,000원 X 5두 X 4일	800,000
		현장적응훈련비	40,000원 X 5두 X 2일	400,000
		훈련조교 수당	50,000원 X 5두 X 6일	1,500,000
		소계		2,700,000
	기타	의료비(예방접종, 불임수술등)	5,000원 X 14개월 X 9두	630,000
		용품비 (가운,줄등)	40,000원 X 9두	360,000
		소계		990,000
	사후관리	분양후 분기별관리	30,000원 X 4회 X 5두	600,000
간접비		기관운영비등	500,000 X 14개월	7,000,000
합 계 (청각도우미개 5두 훈련 분양)				32,910,000
청각장애인도우미개 1두의 경우 : $32,910,000 / 5 = 6,582,000$ 원/두				
종, 모견 구입비를 제외했을 경우(차년도) : $(32,910,000 - 2,000,000) / 5 = 6,182,000$ 원/두				

7.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조건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보조건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건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건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건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건 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

8. 장애인도우미개 활성화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민간운영도우미개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 이삭도우미개학교의 경우 장애인도우미개의 불모지인 한국에 1992년 이형구 소장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장애인도우미개를 훈련하여 보급하여 왔으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 200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보조건전문훈련기관으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애써 교육한 장애인도우미개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200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전문훈련기관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이삭도우미개학교는 현재 소장을 비롯하여 7명의 훈련조교와 훈련 중인 60여 마리의

후보견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료비 등 일개월의 운영비가 최소 1,500만원 이상 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운영상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졸 근무경력 1년의 훈련조교 월급여액이 600,000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에 2-3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 2002년과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예산처의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국내의 민간운영 2개 단체 중 1개 단체의 지원 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 2005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으 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 이양 [2004년 기준 보건 복 지부 총 장애인복지부문 보조사업 38개중 24개(63.2%)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보 건복지 부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경기도는 지방이양사업에 장애인보조견사업이 명시 가 되어있 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행해야할 사업이라고 지원을 거부하고 있 는 실정이다.

- 2005년 10월 현재까지 시각 7마리, 청각 32마리, 지체 14마리, 치료 4마리 등 57마 리의 장애인도우미개를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였으며 여러 마리의 도우미개들 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무리하고 분양 중에 있다.

●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분야이며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로서 도우미개 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장애인도우미개의 보급사업은 이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종사원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종 사원 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전문인으로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 이고 일 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정된 여건에서 장 애인도우미개의 육성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도우미개 육성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은 도우미개의 기능적인 면과 각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이 필요하다. 시각과 지체 도우미개의 훈련사의 경우 한 마리의 도우미개를 책임지고 양 성하기 위해서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훈련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 현재 전문인력의 양성은 이삭도우미개학교와 삼성안내견학교에서 자체적 프로그램에 의 하여 양성하고 있다.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관련학 과의 개설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서정대학 애완동물과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도우미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도우미개 활용의 사회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장애인도우미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적 인 강제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들의 불편한 신체의 일부라는 도우미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매스컴을 활용한 도우미개의 홍보와 초중고, 대학과정의 교재에 도우미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도우미개에 대한 상식과 관심을 갖을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정보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들의 제도권 교육부족으로 인한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의 장애인도우미개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 부족은 실수요 대상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이 시작된 것이 10년이 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도우미개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많은 장애인들이 도우미개의 도움으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비장애인뿐이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 복지관, 재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도우미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재활의 수단으로 도우미개의 활용을 다른 방법과 함께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애인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한국의 주거문화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서 생활하며 바닥에서 상을 펴고 식사하는 문화이다. 그런 문화 속에서 도우미개의 실내생활은 털 빠짐과 배변 등 많은 문제를 갖게된다.

- 또한 우리의 개에 대한 인식은 경비견으로서의 역할과 음식문화의 한 면으로 잠재되어 있으며 요즘 들어 애완동물과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이런 문화 속에서 장애인들이나 그의 주변가족들이 도우미개를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거문화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너무 크지 않고 털 빠짐이 적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도우미개의 육성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장애인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

많은 장애인들은 불편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해진 현재의 생활방식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장애인들에게 도우미개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결론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도우미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운영도우미개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인도우미개 전문훈련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도우미개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